

#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남진삼 의원)

의안 번호	426
----------	-----

발의 연월일 : 2025년 5월 7일

발의자 남진삼 의원

찬성자 박춘희, 김광성, 김성기 의원

### 1. 제안이유

넓은 관할구역, 신속출동, 군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내 신고 다발  
지 거점장소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가 필요한 점을 반영하여, 관련 내  
용을 신설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순찰차 정의 및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(안 제10조의4제1항)
- 나.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설치 및 보조표지(안 제10조의4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5. 4. 22. ~ 4. 28.(의회사무과-1732), 의견없음

##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4(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 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순찰차”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,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10조의4(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순찰차”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,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.</p>

[관계법령]

## 주차장법 시행규칙

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6.7. 27. >

1.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  2.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
  3.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  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  5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- 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(이하 이 항에서 “전용주차자동차”라 한다)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.<신설 2021. 4. 16. >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2021. 4. 16. >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제10조의4(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순찰차”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,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.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남진삼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0